

제주서귀포혁신도시 내 1단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터넷 및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서귀포혁신내1단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458

-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에서는 콜센터(1600-1004, 1670-0003) 등을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0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현재 조기분양전환 완료단지로 임대주택 잔여세대(78세대)의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10년차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분양전환시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0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외국인은 신청불가)
- 공고일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어 당첨 발표 후 공가 2세대에 대해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순번부터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우리공사와 **향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즉,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됨) 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당첨일(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동일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청약자격(거주 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탈락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지위는 상실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변동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동 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이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공급 개요
개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 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유의사항	- 해당 주택은 분양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로서, 총 450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236호이며, 조기분양전환 이후 잔여세대는 78호임 (금회 30명 추가모집) - 이 주택은 2년 이내에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므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최초) 체결함.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

I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대상

단지명	위치	주택관리번호	총 건설호수	비고
제주서귀포혁신도시 LH 1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2022000458	총 7개동 중 4개동, 236세대	조기분양전환완료 후 잔여세대 78세대

- 총 7개동 중 101~104동까지 공공임대주택임.

신청 형태	주택유형	공급형별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현재 공사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	최초입주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59A	059.9800A	59.98	19.7740	79.7540	3.0728	8.3624	91.1892	236	2	0	30	'14.02

- 해당단지 **조기분양전환 후 임대주택 잔여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기에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공가) 발생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며, 본인 순번에 따라 계약기간이 예상보다 단축되거나 길어질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시기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 임대기간

■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4.02.29 까지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4.02.28)로부터 10년이며(개별 계약자가 이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10년이 아님),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4.03.01부터 분양전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은 **2년 이내에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므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최초) 체결합니다.**

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및 전환보증금)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금액단위 : 원)

신청 형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9.9800A	27,431,000	5,486,000	21,945,000	482,790	(+)69,000,000	96,431,000	195,290
					(-)15,000,000	12,431,000	514,040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동별, 향별, 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고일 이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현재기준 증액시 5%, 감액시 2.5%적용)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음.**

(단위: 천원)

단지명	주택형	합계	택지비	건축비
서귀포혁신LH1단지	059.9800A(59A)	106,269	17,979	88,290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 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단, 관련 법령 등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초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단 지	최초입주지정기간	분양전환예정(년/월)
제주서귀포혁신도시 LH 1단지	2014.01.23 ~ 2014.02.28	2024.03

II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01)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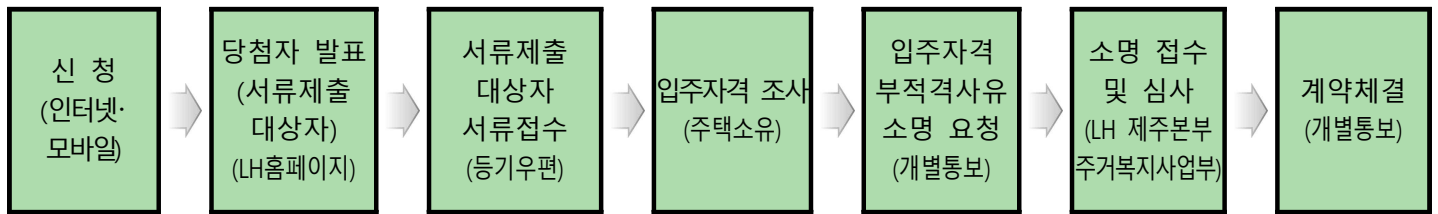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 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2.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절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순번)는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해당사항
무주택기간	<p>-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표. 3.「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p> <p>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p> <p>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p> <p>예시3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p> <p>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p> <p>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p>

3.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8.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9.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Ⅲ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1. 모집일정

신청 순위	청약신청	접수방법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일시 (방문 및 등기우편)	계약체결
1순위	'22.07.19(화) 10:00~17:00	온라인 · 모바일 접수 (LH청약센터)	'22.08.05(금) 17:00 이후	'22.08.17(수)~08.18(목) 10:00 ~ 17: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LH 제주본부 주거복지사업부 공급담당자 앞 ** '22.08.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2순위	'22.07.20(수) 10:00~17:00		LH청약센터 ARS(1661-7700)		

- * 본 공고는 현장방문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1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할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공공임대)선택

2. 신청방법 [인터넷 · 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설치 → LH청약센터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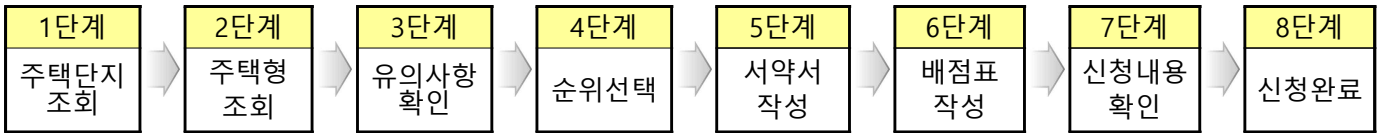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공동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임대주택 청약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7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당첨/낙찰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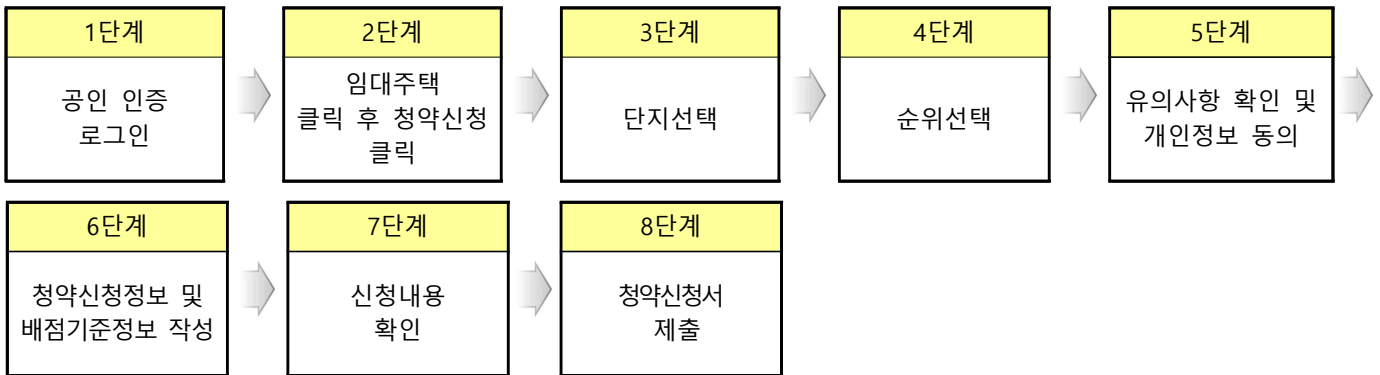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IV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및 서류제출 등 안내

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안내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별도안내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됨 (당첨취소)**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제출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서류제출
'22.08.05(금) 17:00이후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22.08.17(수)~08.18(목) * 08.18(목) 소인(발송)분까지만 접수가능 * 등기 봉투 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반드시 표기바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100 LH 제주본부 주거복지사업부 공급담당자 앞 (우)63180

- ※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 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제주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2.07.0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22.08.17(수)~08.18(목)]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공통)사항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본인 준비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1]작성 . (대상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양식첨부
해당자 추가 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 신청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1통 . 2022.07.01 이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3년이상 무주택 입증서류) . 공급신청자가 만33세 미만이며 혼인을 한 경우로써 1순위 신청할 경우		

V 신청시 확인사항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본인 및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재당첨 제한기간(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계약 시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6.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당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추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고일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어 당첨 발표 후 공가 2세대에 대해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순번부터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결정**됩니다.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주소, 핸드폰번호)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64-720-1042)로 통화 후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기존 입주자의 해약·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남해종합건설(주)	(공사이행보증서로대체)	-

평면도 등 (참고자료)

[서귀포혁신NH1단지 59형]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당첨자 ARS	☎ 1661-7700
인 터 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청약상담장소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p>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0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신청자명 :

인터넷접수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